

제269회 임시회
2008.4.24(목)

심 사 보 고 서

충청북도내수면연구소 시험·조사 및 분석에 관한 조례안



산업경제위원회

충청북도내수면연구소 시험·조사 및 분석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08. 4. 24(목)

산업경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 출 자 : 충청북도지사

나. 제출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2008년 4월 7일
- 회부일자 : 2008년 4월 11일

다. 상정일자 : 제26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2008.4.18) 상정,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 : 농정본부장 김정수)

가. 제안이유

- 안전한 수산물 생산으로 소비자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소비를 증대하고자 각종 첨단 분석 장비를 구비하였기에,

- 시험·조사 및 분석 업무를 제도화하여 체계적으로 관리 운영하고, 수익자부담 원칙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 시험·조사 및 분석의뢰 (안 제3조)
 - 의뢰자는 신청서와 시험·분석용 검체를 연구소에 제출
 - 시험·조사에 대한 연구용역 의뢰 시는 설계서를 제출
- 수수료 및 징수방법 (안 제4조)
 - 수수료는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및 국립수산물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한 수수료 규정을 적용
 - 용역의뢰 수수료 : 용역의뢰 설계서상의 견적가격으로 결정
 - 수수료 납부는 충청북도 수입증지로 사전에 납부
- 수수료 면제(안 제6조)
 -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수산단체가 의뢰 시 수수료 면제

3. 검토보고 요지

(산업경제전문위원 : 최영배)

- 충청북도내수면연구소 시험·조사 및 분석에 관한 조례안은 우리 도에서는 이번에 처음으로 제정되는 조례로, 안전한 수산물 생산으로 소비자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소비를 증대하기 위해 첨단장비를 구비하여, 각종 수산물 등에 대한 시험·조사 및 분석업무를 제도화하여 체계적으로 관리·운영하고 이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하기 위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써 조례제정의 필요성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 다만, 조례안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고시하는 수수료 및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수료를 적용한다는 규정에 대해서는 우리도 실정을 감안하여 합당한지 관련부서의 의견을 청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내수면연구소 시험·조사 및 분석에 관한 조례안

충청북도조례 제 호

충청북도내수면연구소 시험·조사 및 분석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내수면연구소에 의뢰하는 시험·조사 및 분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험'이란 수산물과 관련된 물질 또는 물품의 성질의 변화 및 그 물질이 다른 물질에 미치는 영향을 시험·연구(용역)를 통해 밝혀 내는 것을 말한다.
2. '조사'란 수산물과 관련한 어떠한 사실관계나 그 영향 등을 조사·연구(용역)를 통해 그 내용을 규명하는 행위를 말한다.
3. '분석'이란 수산물 또는 수산용수의 화학적 및 생물학적 분석을 말한다.

제3조(시험·조사 및 분석의뢰) ① 충청북도내수면연구소(이하 "연구소" 라 한다)에 시험·조사 및 분석(이하 "시험 등"이라 한다)을 의뢰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의뢰서와 필요시 시험·분석용 검체 소요량을 연구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연구소에 수산관련 시험·조사(연구용역)을 의뢰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의뢰서에 시험·조사기준 및 방법 등 시험·조사에 필요한 자료와 설계서를 첨부하여 소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③ 소장은 제1항에 따라 시험 등을 의뢰받았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검체 소요량 및 처리기간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수수료 및 징수방법) ① 시료의 분석 수수료는 「국립수산과학원시험·조사및분석의뢰규칙」 제5조에 의거 국립수산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수료를 적용한다. 다만, 항생물질 시료의 분석 수수료는 「수산물품

「질관리법 시행규칙」 제70조에 의거 국립수산물품질 검사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수료를 적용한다.

- ② 제1항의 수수료에 기재되지 아니한 품목은 유사한 품목의 수수료에 의한다.
- ③ 시험·조사(연구용역)의 수수료는 설계서에 의한 견적가격에 의하며, 시험·조사 시 시료의 분석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1항의 수수료를 견적가격에 포함 시킨다.
- ④ 시험 등의 사본 발급수수료는 「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70조에 의거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수료를 적용한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수수료는 충청북도 수입증지로 사전에 납부하여야 하며 사본 청구 시에도 또한 같다. 다만, 납부금액이 일십만원을 초과할 때는 연구소에서 세외수입 납부고지서를 발급받아 지정은행에 납부하여야 한다.
- ⑥ 제7조제1항에 의한 시험 등의 거부를 제외하고는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5조(성적서 교부 등) ① 연구소에서 시험 등을 실시한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거 그 결과를 의뢰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별표 2의 성적서 교부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사정에 의하여 기일내에 시험 등을 완료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사전에 서면으로 의뢰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② 시험 등의 성적서는 확정 후 발급당시의 주소, 성명 등 오자·탈 자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체의 정정을 하지 못한다.
- ③ 시험 등의 성적서 사본을 교부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으로 사본 발급 의뢰서를 소장에게 제출한다.

제6조(수수료 면제)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산하기관 포함) 또는 수산단체가 그 기능수행상 필요에 의하여 분석을 의뢰 할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제7조(시험 등의 거부) ① 제3조의 의뢰를 받은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험 등을 거부할 수 없다.

1. 시험 등에 인력 및 경비가 과다하게 소요되어 연구소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때
2. 연구소가 보유하는 시설 또는 장비나 신청인이 제공하는 시설 또는 장비로서 시험 등을 할 수 없을 때

② 소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시험 등을 거부하였을 때에는 의뢰자에게 그 뜻을 통지하고, 제출된 시료는 의뢰인의 반환 청구가 있을 때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8조(검체 등의 처리) 제3조에 따라 제출된 검체와 설계서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시험·분석을 행하여도 그 사용가치가 남아있는 검체는 시험·분석이 끝난 후 3일 이내에 시험 의뢰인의 반환청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반환 하여야 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시험·분석용 검체 소요량 및 처리기간 (제3조제4항 관련)**

시험·분석 종별	처 리 기 간	시험·분석용 검체 소요량
수산물외 잔류농약 검사	18일	수산물 1kg
수산물외 항생물질 검사	18일	수산물 1kg
수산물외 중금속 검사	10일	수산물 1kg
수산용수 분석	10일	수산용수 4ℓ
바이러스성 질병검사	13일	10마리 (살아있는 상태)
세균성 질병검사	13일	10마리 (살아있는 상태)
기생성 질병검사	13일	10마리 (살아있는 상태)
조균류 및 사세포 검사	13일	10마리 (살아있는 상태)

[별지 제1호서식]

시험·조사 및 분석 의뢰서(제3조제1항 관련)

의뢰인	① 성 명 (상 호)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 소		④ 전 화 번 호 (핸드폰번호)	
⑤ 의뢰목적				
⑥ 시험·조사 및 분석 종목				
⑦ 검 체 명 및 설 명				
⑧ 현지조사내역				
⑨ 현지조사일정		· ·	부터 까지	(일간)
년 월 일 의뢰인 (서명또는인)				
충청북도내수면연구소장 귀하				
첨부물 : 시험 및 분석 항목별 시료 또는 시험·조사방법 설계서				

[별지 제2호서식]

시험·조사 및 분석의뢰 접수증(제3조제3항 관련)

접수번호_____	
건 명	
민 원 인	
접 수 일	년 월 일
수 수 료	원정
처 리 기 간	<p>년 월 일</p> <p>시험·조사 및 분석 상 사정에 따라 기일이 경과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통지하여 드립니다.</p>
<p>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충청북도내수면연구소장</p>	

[별지 제3호서식]

시험·조사 및 분석 성적서(제5조제1항 관련)

성적서 교부 번호 :

시험·조사 및 분석 종목명 :

의뢰인 주소 :

성명 :

상호 :

충청북도 내수면연구소 시험·조사 및 분석에 관한 조례 제5조 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시험·조사 및 분석 성적서를 교부합니다.

1. 검체내용

시험 등의 종목 (검체명)	의뢰목적	접수일 접수번호
채취장소		

2. 시험결과

년 월 일

충청북도내수면연구소장

이 성적은 제시된 검사물에 한하며 의뢰 목적 이외의 광고·선전 등에 이용할 수 없으며 용기와 포장 등에도 표시할 수 없습니다.

[별지 제4호서식]

시험·조사 및 분석 성적서 사본 발급 의뢰서(제5조제3항 관련)

주 소		상 호 명	
성 명		원본발급 번 호	
시험 등의 종목			
매 수			

상기와 같이 시험·조사 및 분석 성적서의 사본 발급을 의뢰합니다.

년 월 일

의뢰인 주 소

성 명 (서명또는인)

충청북도내수면연구소장 귀하

업무처리 흐름도

구분	신 청 인	처 리 기 관	처 리 기 한
		내수면연구소	
시험 조사 분석	신청서 작성	접수 : 연구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설계서 상 일자 - 시험·조사 용역○ 18일 - 잔류농약 검사 - 항생물질 검사○ 13일 - 어류질병 검사 - 조균류 및 사세포 검사○ 10일 - 중금속 검사 - 수산용수 분석
	수수료 납부	검토 : 담당자	
	시험용 검체 제 출		
	수수료 등 반 환	거 부	
	성적서 교부	시험 등 실시 담 당 자 성적서 교부 담 당 자	

관계법령 발췌

【국립수산과학원 시험·조사 및 분석의뢰규칙】

제5조 (수수료) 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조사 또는 분석을 의뢰하고자 하는 자는 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수료를 수입인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원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이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7.3.29, 2004.8.7>

②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어촌계에서 제3조의 의뢰를 하는 경우에는 원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면제한다. <개정 1981.11.3, 1988.2.13, 1997.3.29>

제8조 (결과서 교부등) ① 원장은 시험·조사 또는 분석의 결과를 서면으로 의뢰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81.11.3, 1988.2.13, 1997.3.29>

② 의뢰자가 결과서의 부분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원장이 정하는 수수료를 첨부하여 신청할 수 있다. <개정 1997.3.29>

□ 국립수산과학원 시험·조사 및 분석 수수료고시

국립수산과학원 시험·조사 및 분석 의뢰규칙 제5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별표와 같이 고시한다.

[별표]

시험·조사 및 분석수수료

구 분	종 목	세 부 종 목	단 위	수수료(원)	비 고
1. 수산용수 분 석	일반지표 성 분	수온, 비중, 탁도, 색상, 취기	각1성분	300	
		PH, 증발산유물	"	500	
		산도, 알칼리도, 경도, 용존산소, 화학적 산소요구량, 유화물, 유화수, 소염분, 질산성질소, 아초산성질소, 인산염, 규산염, 부유물질 감열감량	"	1,000	
	중 금 속 량	수은, 카드뮴, 구리, 아연, 납, 철	"	2,500	
	기타특수 화학물질	페놀, DDP, BHC, 알드린, 파라치온	"	3,000	
7. 수산생물의 병리 검사	양식생물	바이러스성 질병검사	각 1건	20,000	
		세균성 질병검사	"	5,000	
		기생성 질병검사	"	5,000	
		조균류 및 사세포 검사	"	5,000	

【수산물품질관리법】

제44조 (검정) ① 수산물의 품질·규격·성분 또는 잔류물질 등에 대한 검정을 받으려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7.12.21, 2008. 2. 29>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검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검정인력 또는 검정장비의 부족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검정을 실시하고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과를 통보받은 자는 그 사실을 허위 또는 과대 광고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검정의 항목·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시행일:2008.12.22]

【수산물품질관리법시행규칙】

제70조 (수산물등의 검정절차 등) ① 법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산물·수산가공품 및 이식용수산물(이하 이 조에서 "수산물등"이라 한다)의 검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품질검사원장에게 별지 제49호서식의 수산물검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품질검사원장은 법 제4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산물등의 검정을 실시한 때에는 그 결과를 별지 제50호서식의 수산물검정증명서에 의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법 제4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수산물등의 검정항목은 별표 15와 같다. 다만, 검정신청인이 검정을 요구하는 항목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도 검정할 수 있다.

- ④ 수산물등의 검정방법 및 검정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품질검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고시 제2001~11호

수산물품질관리법 제44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70조의 규정에 의거 수산물등의 검정에 관한 세부요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한다.

5. 법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산물의 검정신청 수수료

구 분	검 정 항 목	단 위	1항목당 수수료(원)
(6) 항생물질	옥시테트라싸이클린, 옥소린산(정성) " (정량)	1항목	20,000
	말라카이드그린, 시프로플록사신, 엔로플록사신, 플루메퀸, AHD, AMO, AOZ, SEM	1항목	40,000

주) 위에서 정하지 아니한 항목의 검정수수료는 유사항목의 수수료를 적용한다.